

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08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31일

발 의 자 : 박호근, 김혜련, 김영한,
이윤희, 이해경, 김현기,
문형주, 김미경, 김문수,
황규복, 우창윤, 박마루,
김제리, 김기대, 이숙자,
김동윤, 김인호, 이정훈,
오경환, 한명희, 유 용,
강성언, 김경자(강서),
오봉수 의원(24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·관·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, 마을(자치구)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음.
-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‘마을결합형학교’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,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·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·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,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-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, 학생, 학부모,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,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(마을)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서울시의회는,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, “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려는 것임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·관·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, 마을(자치구)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다.
-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‘마을결합형학교’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,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·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·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,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.
-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, 학생, 학부모,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,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(마을)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.
-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교육혁신사업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, “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.

2017. 8. 31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